공고 제2026 - 529호

2026년도 사업주 위탁훈련(집체) 기관평가 계획 공고

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 제7조의2, 제20조, 제24조, 제53조,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, 「직업능력개발 훈련품질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(직업능력심사평가원)가 수행하는 2026년도 사업주 위탁훈련(집체) 기관평가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11월 20일

고용노동부 장관

Ⅰ. 사업 개요 및 신청 접수

1 사업목적

□ AI 기술 발달로 급변하는 직무 환경에 맞춰 **기업 현장에 필요한 훈련과정을 적시에 공급하기 위해 사업주 위탁훈련 기관평가 실시**

사업주 위탁훈련 기관평가 절차

접수	직업능력개발훈련 기관평가		결과발표		
신청접수 →	기본평가	현장평가 →	결과발표 →	이의 신청 →	이의신청 결과발표
26.11.24.~12.4.	26.12.7.~12.18.		26.12.29.	26.12.29.~27.1.5.	27.1.29.

※ 위 기관평가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용어정의 「직업능력개발 훈련품질에 관한 규정」

① **기본평가**: 준법성 + 재정건전성 등	제12조 제1항
② **현장평가**	제12조 제1항

2 신청 · 접수

□ **(신청대상)**「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운영규정」 제2조에 따른 공동훈련센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

❖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❖

1.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
2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3. 「평생교육법」에 따라 인가·등록·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
4.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
5. 그 밖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

□ **(신청기간)** 2026.11.24.(화) 9:00 ~ 12.4.(금) 18:00까지

○ 신청 내용에 대해 반드시 대표자가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신청

□ **(신청방법)** 신청기간 내 **HRD-Net 심사평가시스템을 통해 신청**

※ 상세 신청 방법은 '사업주 위탁훈련 기관평가 설명회 자료집' 참고

○ 자체평가보고서(별첨1), 대표훈련과정 개요서(별첨2), 사업자등록증명원 필수 제출

○ 평가 '신청완료' 여부를 반드시 확인(**'작성중'일 경우 미신청**으로 처리)

□ **(신청경로)** 고용24 HRD-Net 심사평가시스템 → 인증평가 → 평가신청 → 평가공고조회 → **2026년 41회차로 신청**

3 결과 발표 및 이의신청

□ **(결과발표)** 2026.12.29. 예정

○ HRD-Net 심사평가시스템 및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결과 공고, **HRD-Net 심사평가시스템에서 훈련기관별로 조회** 가능

※ 기관평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결과발표 시 평가신청서에 등록된 훈련기관 담당자에게 SMS 발송 예정

□ **(이의신청)**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 공고 시 안내된 이의신청 기간과 방법에 따라 이의신청 제출

Ⅱ. 훈련기관 평가 세부 계획

1 기본평가

□ **(평가대상)** 본 공고에 따라 기관평가를 신청한 모든 기관

□ **(평가항목)** 준법성, 재정건전성 등을 토대로 훈련기관의 청렴성 및 재정안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

○ 기본평가 감점이 20점 이상이거나 평가실시연도에 전과정 위탁·인정제한 처분 및 2년 연속 행정처분, 사회적 물의 발생 등 기본평가 부적합 기관은 '미흡' 등급 부여

< 기본평가 평가항목 >

1. 준법성	
• 제재 처분 내역 - 시정명령(시정요구 포함) - 계약해지 또는 인정취소, 해당 과정 또는 해당 직종 위탁·인정제한 - 전과정 위탁·인정 제한	• 지도점검 불응에 따른 과태료 부과 이력 • 임금체불 이력 • 최저임금 위반 이력 • 훈련기관 신청자격 보유 여부, 2년 연속 행정처분, 사회적 물의 발생 여부 등
2. 재정건전성	
• 세금체납 여부	• 신용수준

1. 준법성

□ **(임금체불 · 최저임금 위반 내역)** 임금체불·최저임금 위반으로 시정지시 또는 검찰송치*가 2025.1.1.~12.31.에 발생한 경우 1인당 5점 감점(훈련실시 이력에 관계 없이 해당 사항 발생 시 감점 적용)

* 시정지시 없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송치 된 경우 해당

○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시정 불이행으로 기소의견* 송치된 경우, 검찰송치일을 기준으로 1인당 5점 추가 감점

* 지방고용노동관서의 판단에 따른 기소의견 송치 시 감점 적용

○ 근로감독 정기 및 수시 지도·점검에서 임금체불·최저임금 위반으로 시정지시가 있었으나, 시정완료로 종결되었을 경우 감점에서 제외

□ **(부정행위에 따른 제재 처분 내역)** 부정수급, 허위 과정인정 및 위탁체결, 부실운영 등으로 인한 제재 처분일이 2025.1.1.~12.31.에 해당할 경우 처분 수준에 따라 건당 감점

○ 기관평가 대상 훈련뿐만 아니라, 고용노동부 제재 처분 대상 전체 과정의 처분 내역을 기준으로 평가

○ 처분의 유효기간이 2025.1.1.~12.31.에 포함되는 1년 이상의 전과정 위탁·인정제한의 경우 미흡 등급 부여

<준법성 평가 감점 기준>

구분	기본 감점	추가 감점				
		제한기간			부정 수급 (100만원미만)	훈련생(수료생) 허위 취업 행정처분 건
		~6개월 미만	6개월 ~1년미만	1년 이상		
시정명령(시정요구 포함)	1점					
계약해지(인정취소), 해당직종(해당과정) 위탁·인정제한	5점	-	+3점	+6점	+2점	+5점
전과정 위탁·인정제한	10점	-	+5점	+10점	+2점	

※ **(예시)** 인정취소와 3개월 해당직종 위탁·인정제한 시 기본감점 5점과 위반 사유가 훈련생(수료생) 허위 취업일 경우, 기본감점(5점), 훈련생 허위 취업(5점) 추가 감점을 합산하여 총 10점 감점

□ **(지도점검 불응에 따른 과태료 부과 내역)** 지도점검 불응에 따른 과태료 부과일이 2025.1.1.~12.31. 기간에 해당할 경우 감점

※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시행령 별표5 과태료 부과기준 바/사/아 항 참조

< 과태료 부과 감점 기준 >

구분	과태료 부과 1차	과태료 부과 2차
감점	10점	20점

□ **(기타)** 준법성 및 재정건전성 외 훈련실시 자격 보유 여부, 정부지원의 적정성 등을 평가

○ **(훈련기관 신청자격)**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12조, 제17조, 제22조 충족여부 및 훈련기관 지정 유효성 등을 검토하여 **훈련실시 자격 여부를 검토, 미충족 시 '미흡' 등급 부여**

유의사항

○ HRD-Net 심사평가시스템에 사업자등록번호(또는 고유번호), 대표자(공동대표 포함)의 개인정보(주민등록번호, 직위 등)를 반드시 확인하고, 훈련기관 등록 증빙자료를 현행화하는 등 최신 정보로 반드시 수정 필요

○ **(2년연속 행정처분)** 부정·부실 운영으로 2년 연속* 행정처분**이 발생한 훈련기관은 기본평가 '부적합' 및 '미흡' 등급 부여

* 처분일 기준 2024.1.1.~2025.12.31.에 발생한 내역

** ①임금 관련 법 위반이 2년 연속되거나, ②시정명령을 제외한 제재처분(지도점검 불응 과태료 부과 포함)이 2년 연속될 경우

○ **(사회적 물의 등)**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, 직업능력개발훈련 관계 법령 등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고, 심의위원회에서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*하여 사회적 물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'미흡' 등급 부여

* 심의위원회에서 기관평가 제도의 본질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 '미흡' 즉시 부여 및 기존 보유한 평가등급의 유효기간을 단축 조정 가능

※ (예시) 훈련기관 대표자가 최근 2년 이내 중대한 법적 처분을 받을 경우,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'체불사업주 명단공개'에 포함된 경우 등

○ 직업능력개발훈련 관계 법령에 따른 불이익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칭을 달리하여 지배·관리하는 훈련기관의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동일한 기관으로 판단 시 '미흡' 등급 부여

2. 재정건전성

□ **(세금체납)**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각 10점씩 감점

○ 훈련기관이 제출한 '사업자등록증명원'을 기준으로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를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조회하여 평가

유의사항

○ 사업자등록증명원('26. 11. 20.~ 12. 4. 발급분)은 아래 절차를 통해 발급 가능

☞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> 전체메뉴 > 증명·등록·신청 > 즉시발급 증명 > 사업자등록증명 메뉴

☞ 정부24(www.gov.kr) > 자주찾는 서비스 > 사업자등록증명 발급 메뉴

○ 사업자등록증명 발급 신청시 발급유형은 '한글증명', 사용용도/제출처는 '기타',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는 '공개', 수령방법은 '인터넷발급' 선택하여 발급신청 후 HRD-Net에 첨부

○ 서류 발급 시 반드시 '발급번호'를 확인하여 HRD-Net에 작성할 것

□ **(신용수준)** 훈련기관의 신용등급이 CCC등급(CCC+, CCC- 포함) 이하 해당 시 5~20점 감점

○ 사업자등록증명원 정보를 활용하여, 훈련기관의 기업 신용 등급을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조회하여 평가

< 신용수준 평가 감점 기준 >

기업 신용등급	감점기준
① A~B등급	-
② CCC등급(CCC+, CCC-포함)	5점
③ CC등급(CC+, CC-포함)	10점
④ C등급(C+, C-포함)	15점
⑤ D등급, 등급 조회 불가, 서류 미제출, 불인정 서류를 제출한 경우 - (예시1) 기업 신용정보 비공개 등으로 신용등급 조회 불가한 경우 - (예시2) 사업자등록증명원이 아닌 불인정 서류(사업자등록증 등)를 제출한 경우 - (예시3) 사업자등록증명원의 발급기간이 26.11.24.~12.4.(평가신청 기간)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	20점

2 현장평가

□ **(평가대상)** 기관평가를 신청한 모든 기관은 현장평가 필수 참여

□ **(평가대상 직종)** 자체평가 보고서 내 대표훈련과정 개요서의 NCS 소분류를 고려하여 평가위원 배정

○ 훈련기관별 평가대상 직종은 기관평가 접수 마감 이후 HRD-Net 심사평가시스템 및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안내

○ 현장평가 대상 직종 안내 후 훈련기관에서 임의로 직종 변경(추가, 삭제 등) 불가

< 현장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 >

평가항목	신규기관
계	**100점**
훈련운영관리	40점
훈련인프라	35점
훈련전담인력	25점

□ **(평가방법)** 평가위원 3명이 훈련기관을 방문하여 훈련실시역량을 평가

○ 훈련기관이 제출한 자체평가보고서를 토대로 평가위원이 사전평가 실시

○ 사전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증빙자료 검토, 훈련시설 및 장비 점검, 훈련전담인력 및 훈련생 인터뷰 등 현장평가 실시

- 훈련기관의 평가항목별 훈련운영 계획, 훈련운영 내용 및 실적, 우수성 등을 평가

○ 평가대상 직종 수, 기관 규모 등에 따라 평가위원 수, 평가시간 등 현장평가 세부 운영 사항은 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음

< 현장평가 시간 및 평가위원 구성 >

평가시간	2~3시간(현장 상황에 따라 평가시간 연장 가능)
평가위원 수	훈련전문가 2명, 내용전문가 1명 등 총 3명

※ 현장평가 제도 점검 및 품질관리 등을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, 유관기관,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담당자 등이 현장평가를 참관할 수 있음

유의사항

▲ '(전문)대학기관평가인증' 결과를 제출한 **「고등교육법」에 의한 학교**는 현장평가 일부 항목(훈련인프라, 훈련전담인력) 점수를 '(전문)대학기관평가인증' 결과로 준용하되, **현장평가 전체 절차는 일반 훈련기관과 동일하게 실시**

○ **(일정안내) 현장평가일 기준 7일 전** 훈련기관에 **SMS 및 이메일 발송**

- 12.14.~18. 기간 중 기관별 1일을 지정하여 현장평가 실시 예정이며, 상세 일정은 HRD-Net 심사평가시스템에서 조회 가능

유의사항

○ 현장평가 관련 공지 및 알림은 **훈련기관별 기관평가 관리자 및 담당자를 통해 안내**

- 평가신청서의 '평가담당자정보'의 세부정보(관리자 및 담당자 연락처 등)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**심사평가시스템에서 '담당자변경(메뉴명)' 조치 필요**

- 담당자 정보 오기 및 수신 여부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기관의 귀책사유이므로 훈련기관 관리자 및 담당자 연락처(휴대전화, 이메일 등) 사전 확인 필요

Ⅲ. 결과 확정 및 발표

1 평가 등급 부여 및 유효기간

□ 기본평가, 현장평가 결과에 따라 ‘신규 1년(1년인증)’, ‘미흡(인증유예)’ 부여

< 신규기관 평가등급 부여 및 유효기간 >

기본평가	현장평가	평가등급	유효기간
적합 (감점 20점 미만 등)	총점 60점 이상	신규 1년 (1년인증)	결과공고일~ 2027.12.31
	총점 60점 미만	미흡 (인증유예)	결과공고일~ 신규1년 등급 이상 획득 전까지
부적합 (감점 20점 이상 등)			

○ 평가실시연도에 전과정 위탁·인정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 평가점수에 관계없이 ‘미흡(인증유예)’ 부여

Ⅳ. 유의사항

□ **(평가 신청)** 기관평가 신청 시 입력한 내용의 착오 기재 또는 누락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으므로, 입력 내용은 반드시 확인

○ 본사, 지사 형태로 운영되는 훈련기관은 각각 기관평가를 신청해야함

○ 공고 관련 별도 세부사항은 「2026년도 사업주 위탁훈련 기관평가」 설명회 자료집 참조

□ **(불이익 조치)** 평가 진행 또는 결과발표 이후 아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「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훈련기관 평가등급 부여 취소(미흡 등급 조정) 가능

○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12조, 제17조, 제22조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

○ 거짓·조작*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

* 타 훈련기관의 정보 임의 도용 또는 훈련장비 임시 대여, 각종 증빙 허위 제출 등

○ 현장평가 증빙자료 등 각종 서류와 신청 내용의 거짓이 확인된 경우

○ 위촉계약을 하지 않은 훈련교·강사의 개인정보(아이디 및 비밀번호)가 무단 활용되거나, 허위사실이 발견되어 처벌이 확정된 경우

※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사용할 경우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

○ 사회적 물의 발생 또는 실적 산정기간에 해당하는 감점 등 훈련기관 평가 '미흡'에 해당하는 사항이 추가 확인(발생)된 경우

○ 유관기관 의견 확인결과, 훈련기관 운영이 곤란하다고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

*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·지사

□ **(행정처분 평가 반영)** 집행정지 인용 등으로 이전 평가에 반영되지 않은 처분은 관련 행정소송·심판(훈련기관 패소)의 집행정지 만료 시점에 기관평가의 행정처분 산정 기간에 관계없이 반영

Ⅴ. 일정 및 문의처

□ 주요 일정

구분	주요 내용	추진 일정
1. 계획 공고	· 사업주 위탁훈련 기관평가 계획 공고	26.11.20.
2. 설명회	· 사업주 위탁훈련 기관평가 설명회	26.11.23. 10:30
3. 신청·접수	· 사업주 위탁훈련 기관평가 신청·접수	26.11.24.~12.4.
4. 현장평가 실시	· 훈련기관 현장평가 실시	26.12.14.~12.18.
5. 결과 발표	· 사업주 위탁훈련 기관평가 결과 발표	26.12.29.
6. 이의 신청·접수	· 결과발표에 대한 이의신청	26.12.29.~27.1.5.
7. 이의심의 결과 발표	· 이의신청 결과 발표	27.1.29.

※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□ 문의처 안내

구분	문의처 및 문의 방법		
기관평가	직업능력심사평가원 훈련기관평가센터	누리집	https://www.ksqa.or.kr/ → Q&A 바로가기 → 집체훈련 인증평가
고용24 HRD-Net	한국고용정보원	누리집	https://www.work24.go.kr/ → 고객센터 → 질문과 답변

붙임1 **기본평가 기준**

<table>
<tr><th colspan="2">평가항목</th><th>평가기준</th></tr>
<tr><td rowspan="3">준법성</td><td>제재 처분 내역</td><td>
○ 처분일자 기준 2025.1.1.~12.31.에 발생한 처분당 감점을 적용하며, 동일과정에서 같은 일자에 여러 건의 처분이 발생한 경우 감점이 가장 큰 1개 항목으로 적용
- 시정명령 처분에 한하여 훈련과정(훈련과정ID, 처분일자별)단위로 감점
<table>
<tr><th rowspan="3">구분</th><th rowspan="3">기본 감점</th><th colspan="4">추가 감점</th></tr>
<tr><th colspan="3">제한기간</th><th rowspan="2">부정수급
(100만원 미만)</th><th rowspan="2">훈련생 (수료생) 허위 취업 행정처분 건</th></tr>
<tr><th>~6개월 미만</th><th>6개월 ~1년미만</th><th>1년 이상</th></tr>
<tr><td>시정명령
(시정요구 포함)</td><td colspan="5">1점</td><td rowspan="3">+5점</td></tr>
<tr><td>계약해지(인정취소), 해당직종(해당과정) 위탁·인정제한</td><td>5점</td><td>-</td><td>+3점</td><td>+6점</td><td>+2점</td></tr>
<tr><td>전과정 위탁·인정제한</td><td>10점</td><td>-</td><td>+5점</td><td>+10점</td><td>+2점</td></tr>
</table>
※ 평가 당해연도에 전과정 위탁·인정제한 발생 시에는 '미흡' 부여
</td></tr>
<tr><td>과태료 부과 내역</td><td>
<table>
<tr><th>과태료 1차 부과</th><th>과태료 2차 부과</th></tr>
<tr><td>감점 10점</td><td>감점 20점</td></tr>
</table>
※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 시행령 별표5 과태료 부과기준 바/사/아 항 참조
</td></tr>
<tr><td>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 내역</td><td>
○ '시정지시일' 또는 '검찰송치일*' 기준으로 1인당 5점 감점
* 시정지시 없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된 경우 해당
○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시정 불이행으로 기소의견 송치된 경우, 검찰송치일 기준으로 1인당 5점 추가 감점
○ 근로감독 정기 및 수시 지도·점검에서 임금체불·최저임금 위반으로 시정지시가 있었으나, 시정완료로 종결되었을 경우 감점에서 제외
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재정 건전성</td><td>세금체납 여부</td><td>
<table>
<tr><th>국세 체납</th><th>지방세 체납</th></tr>
<tr><td>감점 10점</td><td>감점 10점</td></tr>
</table>
※ 서류 미제출 및 불인정서류 제출 시 국세, 지방세 각 항목별로 감점 10점 적용
</td></tr>
<tr><td>신용수준</td><td>
<신용수준 평가 감점 기준>
<table>
<tr><th>기업 신용등급</th><th>감점기준</th></tr>
<tr><td>① A~B등급</td><td>-</td></tr>
<tr><td>② CCC등급(CCC+, CCC-포함)</td><td>5점</td></tr>
<tr><td>③ CC등급(CC+, CC-포함)</td><td>10점</td></tr>
<tr><td>④ C등급(C+, C-포함)</td><td>15점</td></tr>
<tr><td>⑤ D등급, 등급 조회 불가, 서류 미제출, 불인정 서류를 제출한 경우
- (예시1) 기업 신용정보 비공개 등으로 신용등급 조회 불가한 경우
- (예시2) 사업자등록증명원이 아닌 불인정 서류(사업자등록증 등)를 제출한 경우
- (예시3) 사업자등록증명원의 발급기간이 26.11.24.~12.4.(평가신청 기간)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</td><td>20점</td></tr>
</table>
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기타</td><td>○ 훈련기관 신청자격 보유 여부, 준법성 연속감점 해당 여부, 사회적 물의 발생 여부 등</td></tr>
</table>

붙임2 **현장평가 기준**

□ 현장평가(100점)

평가항목	평가기준
훈련운영관리 (40)	① 다양한 수요(요구)를 반영하여 훈련과정을 개발할 수 있는가? ② 훈련 특성을 고려하여 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가? ③ 훈련과정 운영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가? ④ 훈련생 초기상담, 고충 지원 등을 통해 훈련생을 관리할 수 있는가? ⑤ 훈련생 특성을 고려하여 취업 및 경력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가? ⑥ 평가체계를 갖추어 훈련생의 성취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가? ⑦ 훈련생 모집을 위한 훈련 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?
훈련인프라 (35)	① 기관의 경영원칙에 따라 발전목표와 실행계획을 구성하고 있는가? ② 기관의 주요 정보보안 관리계획을 구성하고 있는가? ③ 훈련운영에 필요한 훈련시설과 장비를 확보하고 있는가? ④ 훈련시설 및 장비에 대해 관리계획을 구성하고 있는가? ⑤ 자체적으로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가?
훈련전담인력 (25)	① 훈련전담인력의 근로조건이 적절한가? ② 훈련운영에 필요한 훈련교·강사를 확보하고 있는가? ③ 훈련운영에 필요한 행정인력을 확보하고 있는가? ④ 훈련전담인력의 업무역량을 관리할 수 있는가?